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내지 제310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국가적·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은 간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함

II. 언론중재제도의 의의와 내용

1. 언론중재제도의 의의

정기간행물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중재기관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제17조 제1항), 피해자나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그 협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여 중재절차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가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9조 제1항), 방송법(제91조)은 정기간행물법의 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들 스스로의 합의와 법원의 재판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래에는 재판 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와 조정, 알선, 화해 등의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재란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대신 중재인이라는 제3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조정은 제3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분쟁 대상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이나 조언을 통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절충안을 제시하여 이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등으로 양자간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중재는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화해와 다르고, 제3자가 법원에 대신하여 판정을 하지는 아니하고 알선, 권유를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소극적 역할에 그친다는 점에서 본래 의미의 중재와도 다르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결국 언론중재는 그 법문상의 표현과는 달리 중재가 아닌 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기관과 조정절차 등이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조정 결과 이루어진 합의에 대하여는 특별히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7항) 조정 일반의 그것과 다른 차이가 있다.

2. 언론중재제도의 역할

그러면 폐지된 언론기본법과 이를 대체한 현행 정기간행물법 등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를 거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 내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자유와 원리상 국가(행정권력)가 언론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적 기관에 의한 조정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는 공무원이나 정당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는 합의제형 기관으로서 행정권력과 절연되어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있고, 조정의 본질상 언론중재위원회가 재판에 갈음하는 판단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한 합의를 유도할 뿐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에의 출소권(出訴權)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전치절차인 언론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치게 하였다 하여 언론의 자유와 독립,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언론기본법 등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특이하게 조정절차인 언론중재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는, ① 국민과 언론 사이에 완충장치를 두어 양자간의 긴장과 대립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② 국민과 언론에게 생소한 반론권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키고, 특히 언론에 비해 여러 면에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하여 쉽게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보조를 하며, ③ 소송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제거하여 신속, 저렴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법정 밖에 화해와 조정의 장을 만들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엄격하고 공식적인 재판절차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냄으로써,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신속, 간편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기간행물법은 중재신청의 접수와 동시에 절차를 개시하여 14일 이내 늦어도 21일 이내에 이를 종료케 하고(제18조 제4항, 제6항 단서), 중재절차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재절차에 현출된 분쟁의 줄거리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를 요약, 정리하여 법원에 송부케 함으로써(시행령 제31조 제2항,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3항) 법원 소송절차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케 하는 일방, 중재절차를 거친 후의 법원의 소송절차 역시 엄격한 본안소송절차가 아닌 신속, 간이한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제19조 제4항) 독자나 시청자의 뇌리에 원 보도로 인한 확고한 인식이 고착되기 전에 피해자의 반론주장을 신속히 보도하여 피해를 구제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익 침해의 우려가 있는 보도내용을 사후에 점검하여 당해 언론사에게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정권고 기능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피해예방의 사전통제 기능 및 언론책임 영역 전반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활동해온 지난 20년 동안의 언론중재제도의 운용 성과를 돌이켜 보건대 위와 같은 입법취지는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언론 모두가 제도를 통하여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및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지식을 얻게 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 언론은 반론권제도에 대한 초기의 본능적·맹목적 거부와 불신의 태도를 많이 버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중재절차 등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반론권제도를 무리 없이 우리 언론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장치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법적 지위나 맡고 있는 중재기능의 제약과 한계, 또 그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해 언론계 내외로부터 중재위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 질책이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뉴미디어시대의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대응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과 한계가 조정, 해결되어 언론 수익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이 제도가 올바르게 인식됨으로써 이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3. 언론중재제도의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은 각 지역별로 관할권을 갖는 중재부가 하는데, 중재부는 중재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은 위원 3/5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이와 같이 중재기능을 각각의 중재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 것은 조정의 성격상 위원회 전체가 관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분쟁 당사자들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출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 중재절차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재신청

언론중재는 분쟁 당사자인 피해자나 언론사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다만 신속성의 요청상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소 제기에 앞서 반드시 중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2항)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그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참조).

나. 당사자의 출석

중재신청이 적법하여 그 실체관계에 관해 중재(조정)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중재부는 중재기일을 지정하여 양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중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당사자가 천재, 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즉, 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때에는 신청인이 구하는 바대로 반론보

도 또는 정정보도를 이행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정기간행물법 제18조 제5항).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함은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여 굳이 중재에 응할 필요가 없거나, 반대로 신청인의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확고하거나 중재절차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는 의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초창기에는 반론권 및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이와 같이 언론사가 아무런 통지나 사유의 고지도 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중재 신청인과 중재부는 속절 없이 피신청인이 출석하기를 기다렸다가 결국 중재도 시도해 보지 못한 채 중재불성립결정을 할 도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신청인)로부터는 중재위원회 및 중재절차 무용론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분쟁조정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한 입법취지도 훼손, 몰각되기에 이르러 1987. 11. 28.에 제정된 정기간행물법은 종전의 언론기본법과 달리 이와 같이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된 것이다.

다. 중재의 실시

중재기일에 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재 즉, 조정을 시도하게 된다.

조정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① 분쟁의 대상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거나, ② 분쟁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거조사를 하거나, ③ 합의의 성립, 불성립, 법원에의 제소 등과 관련한 제반 법률규정 및 그 요건, 효과 등에 대한 안내, 지도를 하거나, ④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권유 또는居中조정을 하는 등이 가능하며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분쟁의 원인인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조사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라. 중재의 불성립과 법원에의 제소

중재부의 조정시도에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부는 중재불성립결정을 내리게 되고,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사건기록은 법원에 송부되며, 법원의 소송절차는 신속한 가처분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그리고 법원의 반론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언론사에게 금전적 제재가 가해진다.

III.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장래 발전방향

1.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한계

가. 조정기관(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공정성 확보